

자치법규

[예 규]

◆ 서울특별시의회의예규 제132호

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

「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」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 원 철 인

2020년 2월 27일

1. 개정이유

- 의회규칙 공포에 관한 사항 전반은 의사담당관 소관 사무이나, 입법담당관 소관으로 되어 있어 해당 조항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업무추진 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제13조(공포절차)제3항 중 “입법담당관”을 “의사담당관”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: 없음

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(공포절차)제3항 중 “입법담당관”을 “의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장 의회규칙의 공포 제13조(공포절차) ③ 입법담당관은 의장의 결재를 받은 의회규칙안에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시에 송부하여 시보 게재를 요청한다.	제4장 의회규칙의 공포 제13조(공포절차) ③ 의사담당관----- ----- -----.

◆ 서울특별시의회의예규 제133호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

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의회장 신 원 철 인
2020년 2월 27일

1. 개정이유

- 본회의·상임위원회 의사진행 시 회의록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 의사진행 모든 과정을 녹음담당자가 녹음하고 전달하여 왔으나, 녹음 기술·기기의 발달로 녹음 방식이 다양하고 편리해져 속기사가 직접 녹음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미 사문화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제6조제2항 삭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: 없음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부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원고의 작성 및 등록) ① (생 략) ② 음향담당직원은 의사진행의 모든 과정을 녹음하여 속기 담당자에게 전달한다. ③ (생 략)	제6조(원고의 작성 및 등록) ①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◆ 서울특별시의회의예규 제134호

서울특별시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예규

「서울특별시의회 방청규정」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 원 철 인

2020년 2월 27일

1. 개정이유

- 본회의장 방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과 단체방청 내용을 수정하고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정비로 그 형식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규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본회의장 방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“방청인의 준수사항(제5조)”을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본회의장 1층 안으로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(제5조제4호)
- 방청 제한 사유에 ‘시민 안전이 필요한 경우’를 추가 (제6조제2항)
- 단체방청에 따른 서식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‘서울특별시의회 단체방청 신청서’ 서식을 별지로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를 양식에 포함(제2조제4항, 별지 서식)
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정비(제2조, 제5조,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: 없음

서울특별시의회 방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의회 방청규정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 방청 규정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본회의가 개의중이거나, 위원회의 회의가 개회 중인 때에 의사진행과정을 방청 할 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 방청에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10인”을 “1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인당”을 “1명당”으로 , “교부하는”을 “발급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장기 방청권”을 “장기방청권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10명 이상의 단체방청의 경우에는 단체방청 신청서(별지 서식)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방청권의 교부)”를 “(방청권의 발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교부받은”을 “발급받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교부하되”를 “발급하되”로 한다.

제5조제3호 중 “가부의견을”을 “찬반의견을”으로 하고, “안된다”를 “안 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방청석을 제외한 본회의장 1층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질서유지가”를 “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이”로 한다.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서울특별시의회 단체방청 신청서

단체명	단체가 아닐 경우 지역명 (예) 종로구 지역주민	대표자성명	
주소	구, 동까지만	전화번호	
방청희망자수		소개의원	있을 경우만 기재
방청희망일시	년 월 일 오전/오후 시 분		

위와 같이 귀 의회를 방청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의회회장 귀하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
수집 · 이용 목적	법령상 의무이행 (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)
수집 · 이용 항목	성명, 소속, 주소, 전화번호
보유기간	5년
동의여부	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,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)

※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·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며,
외부에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서명 또는 인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 ‘
<p><u>서울특별시의회 방청규정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의회 방청 규정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<u>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본회의가 개의중이거나, 위원회의 회의가 개회 중인 때에 의사진행과정을 방청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 방청에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방청권의 종류 등) ①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 시민을 위한 일반방청권, <u>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10인 이상의 단체를 위한 단체방청권, 보도기관 종사자 또는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을 위한 장기방청권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방청권은 <u>1인당 1매씩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발급 당일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장기 방청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방청권을 발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2조(방청권의 종류 등) ①----- ----- ----- <u>10명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1명당</u> ----- <u>발급하는</u>----- -----.</p> <p>③ <u>장기방청권</u>----- -----.</p>
<p>〈<u>신 설</u>〉</p>	<p>④ <u>10명 이상의 단체방청의 경우에는 단체방청 신청서(별지 서식)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.</u></p>
<p>제3조(방청권의 교부) ①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방청권에 주소, 성명, 직업 및 연령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.</p> <p>② 방청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교부하되,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방청인 수를 조정 발급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방청권의 발급)①----- -----<u>발급받은</u>----- -----.</p> <p>②----- -----<u>발급하되</u>----- -----.</p>
<p>제5조(방청인의 준수사항)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거나 소리를 내는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.</u></p>	<p>제5조(방청인의 준수사항)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찬반의견을</u> -----<u>안 된다.</u></p> <p>4. <u>방청석을 제외한 본회의장 1층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.</u></p>
<p>〈<u>신 설</u>〉</p>	<p>4. <u>방청석을 제외한 본회의장 1층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.</u></p>
<p>제6조(방청의 제한 및 퇴장) ①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, 술 취한 사람,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,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.</p>	<p>제6조(방청의 제한 및 퇴장)①----- ----- ----- <u>그 밖에</u>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② <u>질서유지가</u> 필요한 경우와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일지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② <u>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이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지 서식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의회 단체방청 신청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5%;">단 체 명</td> <td style="width: 25%;"><small>단체가 아닐 경우 신청금 (예) 본로구 지역주민</small></td> <td style="width: 25%;">대 표 자 성 명</td> <td style="width: 25%;"></td> </tr> <tr> <td>주 소</td> <td><small>구, 불우지역</small></td> <td>전화번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방 청 희망자수</td> <td></td> <td>소개의원</td> <td><small>인물, 공무원, 가부</small></td> </tr> <tr> <td>방 청 희망일시</td> <td>년 월 일</td> <td>오전/오후</td> <td>시 분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와 같이 귀 의회를 방청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</th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25%;">수집·이용 목적</td> <td>법령상 의무이행 (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)</td> </tr> <tr> <td>수집·이용 항목</td> <td>성명, 소속, 주소, 전화번호</td> </tr> <tr> <td>보유기간</td> <td>5년</td> </tr> <tr> <td>동의여부</td> <td>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,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)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며, 외부에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명 (서명 또는 인)</p>	단 체 명	<small>단체가 아닐 경우 신청금 (예) 본로구 지역주민</small>	대 표 자 성 명		주 소	<small>구, 불우지역</small>	전화번호		방 청 희망자수		소개의원	<small>인물, 공무원, 가부</small>	방 청 희망일시	년 월 일	오전/오후	시 분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	수집·이용 목적	법령상 의무이행 (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)	수집·이용 항목	성명, 소속, 주소, 전화번호	보유기간	5년	동의여부	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,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)
단 체 명	<small>단체가 아닐 경우 신청금 (예) 본로구 지역주민</small>	대 표 자 성 명																									
주 소	<small>구, 불우지역</small>	전화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
방 청 희망자수		소개의원	<small>인물, 공무원, 가부</small>																								
방 청 희망일시	년 월 일	오전/오후	시 분																								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집·이용 목적	법령상 의무이행 (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)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집·이용 항목	성명, 소속, 주소, 전화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
보유기간	5년																										
동의여부	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,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)																										

◆ 서울특별시의회의예규 제135호

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

「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 원 철 인

2020년 2월 27일

1. 개정이유

- 본회의장 참관 참여를 다양화하기 위해 참관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과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정비로 그 형식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규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참관 대상을 다양화하기 위해 “참관의 허가(제5조)” 조항 중 참관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‘공공기관’을 추가
-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‘서울특별시의회 참관 신청서(별지 서식)’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를 하단에 추가
- ※ 의원(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) 소개 신청서와 기관(또는 단체) 신청서 양식 통일
-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용어와 표현, 문장 제정비로 예규의 내용을 명확히 함(제2조~제9조, 제11조, 제1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: 없음

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, “의회내”를 “의회 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라 함은”을 “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각각 “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내의”를 “안의”로 하고, “등에 의하여”를 “등을 소지해야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의하여 발급 또는 교부받은”을 “따라 발급받은”으로, “출입증에 의한”을 “출입증을 이용한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1항) 중 “5급이상의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”을 “5급 이상의 공무원”으로, “참관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”를 “공공기관이나 참관인이 소속한 기관·단체”로, “(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)”을 “(별지 서식 또는 공문)”으로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1항) 중 “등에 의하여”를 “등으로”로 하고, “교부받아”를 “발급받아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내의”를 “안의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8조에 따라”로, “신원확인후”를 “신원 확인 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공보처에 등록을 필한”을 “국내”로하고, “소속사 및 서울특별시 출입 등록한”을 “서울특별시 출입 등록을 마친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그 밖에 사무처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출입기자증을 교부받은”을 “제2항에 따라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하여 증표의 발급 또는 교부받은”을 “따라 증표를 발급 받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청사내”를 “청사 안”으로, 같은 항 제2호 중 “내”를 “안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발급 또는 교부받은”을 “발급받은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참관</u>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<u>의회내</u>의 기구와 시설을 시찰함을 말한다.</p> <p>2. “<u>청사</u>”라 함은 의회의사당(별관을 포함한다), 부속건물 및 그 대지를 말한다.</p> <p>3. “<u>방문</u>”이라 함은 업무 또는 면회 등을 위하여 회회를 방문한 자에게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4. “<u>출입</u>”이라 함은 의회의원, 사무처 직원 이외의 자에게 업무상 청사출입을 일정기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출입의 원칙) ① (생략)</p> <p>② 공무원은 청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증 등에 의하여 청사를 출입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출입의 범위) 이 규정에 의하여 발급 또는 교부받은 방문증, 출입증에 의한 청사 출입은 회의장 출입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회의장 출입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.</p> <p>제5조(참관의 허가) ① 참관은 의회의원, 의회 소속 5급이상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소개 또는 <u>참관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(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)에 의하여 허가한다.</u></p> <p>제6조(방문의 허용) ① 면회 등 용무로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 그 신분증을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패용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참관·방문의 제한) 의회 내의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참관 또는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출입신청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청사를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사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----- 뜻은 -----.</p> <p>1. ----- <u>이</u>란----- ----- <u>의회 안</u> -----.</p> <p>2. -----<u>란</u> -----.</p> <p>3. -----<u>이</u>란-----.</p> <p>4. -----<u>이</u>란-----.</p> <p>제3조(출입의 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안</u>의----- ----- 등을 소지해야 -----.</p> <p>제4조(출입의 범위) -----<u>따라</u> <u>발급받은</u> -----<u>출입증을</u> <u>이용한</u>-----.</p> <p>제5조(참관의 허가)-----<u>5급 이상의공무원--</u> <u>공공기관이나 참관인이소속한 기관·단체---</u> <u>(별지 서식 또는 공문)-----<u>따라</u>-----</u></p> <p>제6조(방문의 허용)----- -----<u>등으로</u>----- -----<u>발급받아</u>-----.</p> <p>제7조(참관·방문의 제한) ----- <u>안</u>의-----</p> <p>제8조(출입신청) -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<u>기타</u>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제9조(출입의 허가)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<u>신원확인후</u> 출입증을 발급한다.</p> <p>② 취재 활동을 위하여 청사를 출입하고자 하는 보도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입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.</p> <p>1. <u>공보처에</u> 등록을 필한 국내 일간신문사, 통신사 또는 방송국 기자(견습기자를 제외한다)로서 <u>소속사 및 서울특별시 출입</u> 등록한 경우</p> <p>2. (생 략) <신 설>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출입기자증을 교부받은 자는 출입이 허가된 기간에 한하여 방청석에 출입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출입자의 준수사항)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증표의 발급 또는 교부받은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청사내에</u>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의 일시제한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2. 청사 내에서는 증표를 반드시 패용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.</p> <p>3. 증표를 발급 또는 교부받은 자는 그 증표에 지정된 구역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으며 용무를 마친 때에는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.</p> <p>4. (생 략)</p> <p>제13조(발급기준 등) 이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-----</p> <p>제9조(출입의 허가) ① <u>제8조에 따라</u>-----신원 확인 후-----.</p> <p>② ----- -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</p> <p>1. <u>국내</u>----- -----<u>서울특별시 출입</u> -----<u>등록을 마친</u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 사무처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</u> <u>한 경우</u>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은-----</p> <p>제11조(출입자의 준수사항) ①----- <u>따라 증표를 발급받은</u>-----</p> <p>1. <u>청사 안</u>-----</p> <p>2. -----<u>안</u>-----</p> <p>3. -----<u>발급받은</u>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발급기준 등) ----- <u>따른</u>-----</p>

◆ 서울특별시의회의예규 제136호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

「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」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 원 철 인

2020년 2월 27일

1. 개정이유

- 청가서 및 결석계, 출석요구서 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징계절차를 명확히 하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정비로 그 형식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규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‘청가서 및 결석계, 출석요구서’를 통일된 기준으로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별지로 해당 서식 신설(제2조, 제7조, 제8조)
- 정당한 이유 없이 ‘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’ 징계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 신설(제8조제3항)
-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정비(제1조~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없음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24조 제3항”을 “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24조제3항”으로, “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”을 “청가 및 결석에 필요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조 제목 “(청가서의)”을 “(청가서)”로 하고, “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(위원회의 경우 위원장)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가서를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.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)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조 제목 “(청가의 허가)”를 “(청가허가)”로 하고, “의원의”를 “의원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목 “(청가허가의)”를 “(청가허가)”로 하고, 제1항 중 “소속하는”을 “속하는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조 제목 “(청가서의)”를 “(청가서)”로 하고, “의원이 청가의 기간이”를 “의원은 허가된 청가 기간이”로 “하여야 한다”를 “해야 한다”로 한다.

제6조 중 조 제목 “(청가허가의)”를 “(청가허가)”로 하고, “청가의 허가”를 각각 “청가허가”로 “청가의 기간내에”를 “청가 기간 내에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”를 “별제 제2호서식에 따른 결석계를 결석일

로부터”로 “단, 위원장에게”를 “다만, 의원이 위원장에게”로 한다.

제8조 제목 “(출석요구서의)”를 “(출석요구서)”로 하고, 제1항 중 “이유없이”를 “이유 없이”로 “2일이상”를 “2일 이상”으로, “문서”를 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출석요구서를 받은후”를 “의원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”로, “이유없이”를 “이유 없이”로, “경우에는, 이를”을 “경우에는 의원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의원이 제2항에 해당하여 징계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별지 제1호서식, 제2호서식, 제3호서식을 신설한다.

부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출 석 요 구 서

- 소속위원회 :
- 성 명 :

귀하께서는 제 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(임시회) 본회의(위원회)에 ○○일간 결석하여,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하오니, 본회의(위원회)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의회의장(00위원회위원장) (인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이 규정은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24조제3항----- ----- 청가 및 결석에 필요한 사항-----.</p>
<p>제2조(청가서의 제출)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(위원회의 경우 위원장)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	<p>제2조(청가서 제출)-----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가서를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.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)-----.</p>
<p>제3조(청가의 허가) 의원의 청가는 의장(위원회의 경우 위원장)이 허가한다.</p>	<p>제3조(청가허가) 의원 청가는----- -----.</p>
<p>제4조(청가허가의 통지) ①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. ② (생략)</p>	<p>제4조(청가허가 통지) ①----- ----- 속하는----- ----. ② (현재와 같음)</p>
<p>제5조(청가서의 재제출)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,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청가서 재제출) 의원은 허가된 청가 기간이----- ----- 해야 한다.</p>
<p>제6조(청가허가의 실효)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.</p>	<p>제6조(청가허가 실효) 청가허가----- ----- 청가 기간 내에 청가허가-----.</p>
<p>제7조(결석계)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의장(위원회의 경우 위원장)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단, 위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.</p>	<p>제7조(결석계)----- -----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석계를 결석일로부터----- -----. 다만, 의원이 위원장에게----- -----.</p>
<p>제8조(출석요구서의 발송) ①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문서로 출석요구를 하되,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출석요구서 발송) ①----- -----이유 없이----- ----- 2일 이상----- -----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-----.</p>
<p>② 출석요구를 받은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, 이를 징계할 수 있다.</p>	<p>② 의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----- 이유 없이----- ----- 경우에는 의원-----.</p>
<p><신 설></p>	<p>③ 의원이 제2항에 해당하여 징계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[별지 제1호서식] 청 가 서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auto; width: 80%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청 가 서</p> <p>본 의원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가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1. 이 유 : 2. 기 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)일간 3. 연락처 : 년 월 일 소속위원회 : 의 원 명 : (인) 서울특별시의회의장(00위원회위원장) 귀하</p> </div>
<p><신 설></p>	<p>[별지 제2호서식] 결 석 계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auto; width: 80%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결 석 계</p> <p>본 의원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회기 중에 출석하지 못하였기에 결석계를 제출합니다.</p> <p>1. 이 유 : 2. 기 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)일간 3. 연락처 : 년 월 일 소속위원회 : 의 원 명 : (인) 서울특별시의회의장(00위원회위원장) 귀하</p> </div>
<p><신 설></p>	<p>[별지 제3호서식]</p>

회 행	개 정 안
	<div data-bbox="810 405 1299 1003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출 석 요 구 서</p> <p>○ 소속위원회 :</p> <p>○ 성 명 :</p> <p>귀하께서는 제 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(임시회) 본회의(위원회)에 00일간 결석하여,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하오니 본회의(위원회)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의회의장(00위원회위원장) (인)</p> </div>